협 력 회 사 행 동 규 칙

목 차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---------- 나-A2-15-1
제 2 조 (적용대상) ---------- 나-A2-15-1
제 3 조 (책임과 역할) ---------- 나-A2-15-1

제 2 장 인권 및 노동

제 4 조 (자발적 근로/강제노동 금지) ---------- 나-A2-15-1
제 5 조 (차별금지) ---------- 나-A2-15-1
제 6 조 (아동노동 금지) ---------- 나-A2-15-2
제 7 조 (임금과 복리후생) ---------- 나-A2-15-2
제 8 조 (인도적 대우) ---------- 나-A2-15-2
제 9 조 (결사의 자유 보장) ---------- 나-A2-15-2

제 3 장 안전 및 보건

제 10 조 (안전보건 법률 및 규정준수) ---------- 나-A2-15-2
제 11 조 (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) ---------- 나-A2-15-2
제 12 조 (위험성평가) ---------- 나-A2-15-3
제 13 조 (취약 근로자 관리) ---------- 나-A2-15-3
제 14 조 (비상상황 대응) ---------- 나-A2-15-3

제 15 조 (산업재해 및 질병예방) ---------- 나-A2-15-3
제 16 조 (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관리) ---------- 나-A2-15-3
제 17 조 (설비안전) ---------- 나-A2-15-3
제 18 조 (식당과 기숙사 관리) ---------- 나-A2-15-4
제 19 조 (건강검진 및 사후관리) ---------- 나-A2-15-4
제 20 조 (안전보건교육) ---------- 나-A2-15-4

제 4 장 환경

제 21 조 (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경영시스템 운영) ---------- 나-A2-15-4
제 22 조 (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· 에너지 사용 절감) ---------- 나-A2-15-4
제 23 조 (수자원 관리) ---------- 나-A2-15-4
제 24 조 (대기오염 관리) ---------- 나-A2-15-4
제 25 조 (폐기물 관리) ---------- 나-A2-15-5
제 26 조 (화학물질 관리) ---------- 나-A2-15-5

제 5 장 기업윤리

제 27 조 (투명경영 준수 및 부당이익 금지) ---------- 나-A2-15-5
제 28 조 (이해상충 방지) ---------- 나-A2-15-5
제 29 조 (공정거래) ---------- 나-A2-15-5
제 30 조 (개인정보 보호) ---------- 나-A2-15-5
제 31 조 (지적재산권 보호) ---------- 나-A2-15-5
제 32 조 (정보보호) ---------- 나-A2-15-5
제 33 조 (신원보호와 보복금지) ---------- 나-A2-15-6

제 6 장 합법적 원자재 취득

제 34 조 (분쟁광물 사용금지) ---------- 나-A2-15-6

제 7 장 경영시스템

제 35 조 (경영진의 준수의지 선언과 책임 명확화) ---------- 나-A2-15-6
제 36 조 (리스크와 목표관리) ---------- 나-A2-15-6
제 37 조 (구성원 교육훈련 및 의견수렴) ---------- 나-A2-15-7
제 38 조 (문서 기록/관리) ---------- 나-A2-15-7
제 39 조 (외부 요구사항의 인식 및 모니터링) ---------- 나-A2-15-7
제 40 조 (협력회사의 책임) ---------- 나-A2-15-7

부칙

협 력 회 사 행 동 규 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본 협력회사 행동규칙은 SK 에코플랜트 주식회사(이하 'SK 에코플랜트'라 함)의 모든 협력회사가 경영에 필요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노동/인권, 환경, 안전/보건, 기업윤리,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갖추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제 2 조 (적용대상) SK 에코플랜트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본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하위협력사 등 모든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.

제 3 조 (책임과 역할) SK 에코플랜트는 본 규칙을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, SK 에코플랜트가 지정한 외부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방문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 2 장 인권 및 노동

제 4 조 (자발적 근로/강제노동 금지)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(노예, 인신매매, 비자발적 죄수노동 등)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. 채용 시에는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반드시 1 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, 근로 허가증 등의 원본 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.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, 근로자는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제 5 조 (차별금지) 협력회사는 채용,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, 승진, 연수,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고용 관행에 있어서 국적, 인종, 피부색, 연령, 성별, 성 정체성, 출신민족, 장애, 임신, 종교, 정치 성향, 노조 가입,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.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

(임신여부 등)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또한 필요한 경우,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제 6 조 (아동노동 금지) 협력회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. '아동'은 만 15 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. 만 18 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 공정 또는 연장/야간근로에 투입하면 안 됩니다. 실습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,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
제 7 조 (임금과 복리후생) 임금은 최저임금, 시간외 수당 등 법규를 준수하여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
제 8 조 (인도적 대우)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, 체벌, 정신적/육체적 강압, 폭언, 불합리한 제한 등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합리적인 징계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, 해당 규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.

제 9 조 (결사의 자유 보장) 협력회사는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, 가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/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.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는 차별, 보복, 위협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영진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제 3 장 안전 및 보건

제 10 조 (안전보건 법률 및 규정준수)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,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관련 인허가를 취득 · 유지해야 합니다.

제 11 조 (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) 협력회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 · 유지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여 계획, 실행, 점검 등 결과를 검토하는 *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.

*국제적으로 표준화 기구에서(ISO)제정한 ISO45001, 한국형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할 KOSHA-MS(구. KOSHA 18001)가 이에 해당됨

제 12 조 (위험성평가) 협력회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, 기술적/행정적 통제, 예방정비, 작업절차서 내 안전측면 반영,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고,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.

제 13 조 (취약 근로자 관리) 협력회사는 임산부, 연소자 등을 고 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, 장애인, 외국인근로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근로자들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제 14 조 (비상상황 대응) 협력회사는 자연재해, 집단감염,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상황 발생 보고, 대응, 후속조치 등의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.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비상사태 법률 및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반기 1 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, 비상대피로, 유도 등, 감지기경보기,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제 15 조 (산업재해, 질병예방) 협력회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사고관리 절차를 제정하고 준수해야 하며, 산업재해, 중대한 질병 발생 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 또한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제 16 조 (작업환경 내 유해인자 관리)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유해화학물질, 소음, 분진 및 근골격계 부담 작업등의 직업병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·평가하고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중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/감독합니다.

제 17 조 (설비안전) 협력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법규 및 자체 수립된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근로자의

안전을 위해 위험요인으로부터 물리적인 방호/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해당 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식당과 기숙사 관리) 협력회사는 직원에게 깨끗한 화장실과 먹는 물,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/보관/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. 협력회사 또는 파견업체가 제공하는 직원 기숙사는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며, 적절한 비상구와 냉/난방, 온수, 조명 및 환기장치, 시건 가능한 개인 사물함 또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.

제 19 조 (건강검진 및 사후관리)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건강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 변경, 작업전환,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.

제 20 조(안전보건교육)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.

제 4 장 환경

제 21 조 (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경영시스템 운영) 협력회사는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,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체계적으로 식별, 평가, 관리 및 개선하기 위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.

제 22 조 (환경오염 예방과 자원·에너지 사용 절감) 협력회사는 공정개선, 원료대체, 자원보존, 재활용/재사용을 통해 자원/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전력과 연료 소비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.

제 23 조 (수자원 관리)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모든 폐수는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
제 24 조 (대기오염 관리) 협력회사는 공정 상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, 에어로졸, 부식성 가스, 분진, 오존층 파괴물질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법규 허용범위 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
제 25 조 (폐기물 관리) 협력회사는 발생하는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야 하며,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제 26 조 (화학물질 관리) 협력회사는 유출 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(지정 폐기물 포함)을 파악하여 기록하고, 해당물질을 안전하게 저장, 운반, 사용, 재활용/재사용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. 유출 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.

제 5 장 기업윤리

제 27 조 (투명경영 준수 및 부당이익 금지) 협력회사는 뇌물, 횡령,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하여야 하며, 반부패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합니다.

제 28 조 (이해상충 방지) 협력회사는 개인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,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.

제 29 조 (공정거래) 협력회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담합 및 반독점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제 30 조 (개인정보 보호) 협력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(협력회사, 고객사, 임직원 등)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하며, 개인정보의 수집, 저장, 이용, 제공, 파기 등 처리 시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제 31 조 (지적재산권 보호) 협력회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, 기술/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. 또한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.

제 32 조 (정보공개)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노무/안전보건/환경 관리 실태, 경영활동, 지배구조, 재무상태, 성과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.

제 33 조 (신원보호와 보복금지) 협력회사는 정책 및 규정 위반 등 비윤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채널을 운영해야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. 또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여 신고를 이유로 해고, 부당 전보·직무변경, 인사평가 등에서 보복을 금지해야 합니다.

제 6 장 합법적 원자재 취득

제 34 조 (분쟁광물 사용금지) 협력회사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을 통해 취득한 원자재(예: 무장세력이 점거한 광산에서 채굴된 광물, 산림 보존 및 벌목 금지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등)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. 협력회사는 관련 정책 내에 분쟁광물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, SK 에코플랜트로 공급하는 원자재/부품/제품에 포함된 탄탈륨, 주석, 텅스텐, 금(3TG)이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무장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재원 또는 편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 협력회사는 당사로 공급하는 원자재/부품/제품 내 3TG 광물의 원산지 및 공급망에 대하여 실사(due diligence)를 수행해야 하며, SK 에코플랜트 요청에 따라 실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한 협력회사는 당사의 요청 시 당사로 공급하는 원자재/부품/제품 내 3TG 광물의 원산지 및 제련소, 정제회사 정보를 포함한 실사 결과를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.

제 7 장 경영시스템

제 35 조 (경영진의 준수의지 선언과 책임 명확화) 협력회사의 경영진은 본 행동규칙의 준수 책임자로서 준수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.

제 36 조 (리스크와 목표 관리) 협력회사는 인권, 환경, 안전보건, 윤리 측면의 리스크를 상시 파악해야 하며,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년 1 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.

제 37 조 (구성원 교육훈련 및 의견수렴)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칙과 법규내용을 구성원에게 교육해야 하며, 회사의 정책 및 성과 등을 구성원에게 공유하여야 합니다. 또한 본 규칙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 철차를 개선해야 합니다.

제 38 조 (문서 기록/관리) 협력회사는 관련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
제 39 조 (외부 요구사항의 인식 및 모니터링) 협력회사는 본 규칙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.

제 40 조 (협력회사의 책임) 협력회사는 하위 협력사에게 본 규칙을 전달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해야 하며, 하위 협력사가 관련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리스크를 인지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여야 합니다.

부 칙

1. 이 규칙은 202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